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37호

「강릉시 건축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0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,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비(안 제39조제1항)
 -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/☎033-640-4034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tjvy9207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조례 제 호

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9미터”를 각각 “10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
· 인가·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(생략)</p> <p>1. 높이 <u>9미터</u> 이하인 부분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</p> <p>2. 높이 <u>9미터</u>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39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 <u>10미터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 <u>10미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